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 단
법 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병원장
참 조
제 목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(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)

1. 관련 근거: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-295호(2024. 5. 1.)
2.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<붙임> 양식을 작성하여 2024. 5. 17.(금)까지 본회 정책국(E-mail. law@kha.or.kr, Fax: 02-705-9219)으로 제출바랍니다.

<개정안 주요내용>

- 중증도 높은 환자의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(안 제1조의4제4호)
 -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·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
-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(제39조의19 신설)
 - (자격요건)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
 - (종별 배치기준)
 - ▶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: 2명 (필요시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)
 - ▶ 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: 병원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

<후면 계속>

- 붙임 1.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- 2. 검토서 양식

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- 협회업무 -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대리 천가슬 팀장 강대경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144호(2024.5.2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/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83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cgs@kha.or.kr